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
제1조내지 제6조(생략)		제1조내지 제6조(현행과 같음)	
제7조(공포방법) 조례, 규칙등은 시보다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공 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.		제7조(공포방법)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 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 시로써 한다. ② 조례, 규칙을 공포할 때에는 시보, 일간 신문, 게시판 중 두 가지 이상의 공포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.	
제8조(공포일등) 조례, 규칙 등은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 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 시된 날로 한다.		제8조(공포일등)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 고,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제된 날로 한다. 단, 두 가지 이상의 공 포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초로 게재 또 는 게시된 날로 한다.	
제8조의 2내지 제9조(생략)		제8조의 2내지 제9조(현행과 같음)	

부천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242
의 결 년 원 일	93. 12. 24 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 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□ 제안이유

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민의 수렴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문
위원에게 구정의 전반적인 시책을 자문받아 시책화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임.

☐ 주요골자

- 조례 제2조의 구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은 91. 4. 15일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시 산하 모든 행정의 중요시책을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맡겨져야 됨.
- 위원회를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행정의 전반적인 중요시책을 자문받아 구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자세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능동적인 행정이 절실히 요구됨

부천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243
의 결 년 월 일	93. 12. 24 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☐ 제안이유

입선 시·군에 통합운영 관리되어 왔던 소방행정이 법률 제4419호(91. 12. 14)로 광역소방행정 제제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의 화재예방조례의 적용을 받는바 종전 부천시화재예방조례는 그 적용의 필요성 소멸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법률 제4419(92. 12. 14) 시·군의 소방행정 업무가 광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적용을 받던 현행 부천시화재예방조례는 그 적용의 필요성 소멸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.